# 외국인학생규정

2009. 12. 8 제정2013. 2. 20 개정2022. 4. 13 개정2023. 6. 7 개정

## 제 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이라 한다)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4.13.>

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.

- 1. "외국인 학생"이란 학생 본인과 부모 모두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.
- 2. "외국인 특별전형"이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신(편)입생 입학 전형을 말한다.<개정 2013.2.20>

## 제 2장 입학

- 제3조(지원자격)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하여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의 지원자격은 학칙 제12조 및 제18조에 준하되,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. 단, 이중국적 취득자의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외국인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.<개정 2022.4.13.>
  - 1. 1학년(신입학): 국내 또는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정규교 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<신설 2022.4.13.>
  - 2. 2학년(편입학): 국내 또는 국외 4년제 정규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<신설 2022.4.13.>
  - 3. 3학년(편입학): 국내 또는 국외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전문대

학 졸업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<신설 2022.4.13., 개정 2023.6.7.> [제목개정 2022.4.13.]

- 제3조의2 (제출서류)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전 항의 제출서류 및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은 모집요강에 따로 정한다.<신설 2022.4.13.>

[본조신설 2022.4.13.]

- 제4조(전형) 외국인 특별전형은 본 대학교 학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를 준용하되,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.<개정 2022.4.13.>
  - 1. 지원 서류 적합성 및 지원자격 심사는 국제교류과에서 실시한다.<개정 2022.4.13.>
  - 2. 외국인 특별전형의 심사를 담당할 위원은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전공이 속한 단과대학별 학장(편입학은 전공주임교수)이 추천한 교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22.4.13.>
  - 3. 외국인 특별전형의 공정성 확보, 부정방지 대책수립 및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위하여 '외국인특별전형 입학공정관리위원회'를 설치하며, 그 구성과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22.4.13.>
  - 4.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한 외국인 학생의 입학 사정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실시한다.<신설 2022.4.13.>

## 제 3장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<개정 2022.4.13.>

- 제5조(전공선택 및 이수) ① 외국인 학생은 입학한 모집단위에서 제1전공을 선택하여 야 하고, 추가로 제2전공을 선택하거나 심화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.<개정 2022.4.13.>
  - ② 전공별 이수학점은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.<신설 2022.4.13.> [제목개정 2022.4.13.]

제5조의2(성적평가) 외국인 학생의 성적평가는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. [본조신설 2022.4.13.]

- 제5조의3(졸업인증요건) ① 외국인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한국어 능력시험(TOPIK) 4급(예·체능계는 3급)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  - ② 한국어능력시험(TOPIK)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전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, 총장은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할 수 있다.<신설 2022.4.13.> [본조신설 2022.4.13.]

제6조 <삭제 2013.2.20>

제7조(한국어 능력 측정) 외국인 학생에게는 수업의 수강능력 및 보고서 작성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한국어능력시험 공인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 할 수 있다.

- 제8조(제적) 외국인 학생이 불법취업 등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.<개정 2022.4.13.>
- 제8조의2(휴학) ① 외국인 학생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  - ② 미등록 또는 미복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연락두절,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, 총장은 학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휴학을 명할 수 있다.<신설 2022.4.13.>

[본조신설 2022.4.13.]

- 제8조의3 (학생상담) ① 외국인 학생의 학업성취도 관리 및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매학기 정기상담을 실시한다.
  - ② 전항의 상담 결과 정신건강, 수학 및 진로 등과 관련하여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내·외 전문상담 기관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.<신설 2022.4.13.>
  - ③ 외국인 학생은 전 제1항의 상담에 참여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다.<신설 2022.4.13.>

[본조신설 2022.4.13.]

제9조(학칙 및 규정의 적용)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22.4.13.>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 제2호 개정 및 제6조 삭제)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제5조, 제5조의3의 개정 학칙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